2-2-14 간호학 실무실습 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수대학교 실습교육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간호학 실무실습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교내실습이라 함은 간호학 기초 및 전공교과목과 관련된 실습으로서 교내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을 의미한다.

② 현장실습이라 함은 간호학 전공교과목과 관련된 실습으로서 간호학부에서 승인된 임상 및 지역사회 실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을 의미한다.

③ 자율실습이라 함은 간호학 이론교과 내 실습과 현장실습 및 시뮬레이션 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이 지정된 교내실습실에서 필요한 실습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설 2017.3.1>

④ 시뮬레이션실습이라 함은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시뮬레이터 또는 표준화 환자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간호 상황을 시나리오화 하여 이를 재현하고, 그 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통하여 임상지식과 간호술을 습득하고 비판적 사고를 고취시킬 수 있는 실습을 의미한다. <신설 2017.3.1.><개정 2022.12.5.>

⑤ 제1항과 제2항의 교내실습 및 현장실습이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습운영이 어려운 경우 교내실습, 비대면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12.5.>

⑥ 원거리 실습이라 함은 전주시를 벗어난 국내 지역과 해외 지역에서 실시하는 실습을 말한다.<신설 2024.10.7.>

제3조(실습 학점인정 및 이수시간) 실습의 종류에 따라 학점 당 이수시간 산정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5.>

1. 교내 실습시간은 1학점 당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현장실습은 1학점 당 45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뮬레이션 실습을 포함하여 최소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총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5.>
3. 시뮬레이션 실습교과목은 학점당 30시간으로 운영하며, 시뮬레이션 실습은 6학점 이하로 운영한다. 단, 임상실습 교과목과 연계하여 교수학습방법의 일환으로 시뮬레이션 실습을 운영하는 경우는 임상실습시간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2.12.5.>
4. 질병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 사전에 실습교과 담당교수와 임상현장 지도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결석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한다. 결석한 실습일수는 보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교과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17.3.1.><개정 2022.12.5.>
5. 실습교육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라 대체실습의 경우에는 교내실습과 현장실습의

이수시간을 적용한다. <신설 2022.12.5.>

제4조(교내실습 운영 및 학생배치) ① 실습실 학생배치는 교수 1인당 지도학생 2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5.>

② 실습교과 담당교수는 실습을 종료한 후 실습실 사용 일지를 작성한다.<개정 2017.3.1.>

③ 실습조교는 실습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그리고 실습실 설비, 비품 및 소모품을 관리하고, 목록작성 및 구입, 수리, 폐기 등에 대한 물품관리대장을 기록한다.<개정 2017.3.1.>

④ 삭제 <2017.3.1.>

제5조(자율실습 운영 및 배치) ① 자율실습은 이론과 실습 교과목과 관련된 실습내용, 핵심간호술 및 시뮬레이션 실습을 위해 운영한다. <개정 2022.12.5.>

②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위한 실습실 개방 시간은 주당 4시간 이상 개방한다.

③ 자율실습 학생배치는 실습단위에 따라 8명 이하로 배치한다.

④ 교과담당교수 혹은 실습전담조교는 자율실습 동안 실습실에 상주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⑤ 자율실습 학생은 실습실의 입실과 퇴실, 실습 후 물품 및 환경 정리, 자율실습 일지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제6조(현장실습 운영 및 학생배치) ① 현장실습 학생 배치는 실습단위 당 8명 이하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습목적과 실습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하루 9시간 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습목적과 실습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5.1>

③ 현장실습 지도는 실습 담당교수 및 현장실습 지도자인 임상강사와 프리셉터가 담당한다.

④ 실습조교는 학생의 현장실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⑤ 실습 교과목 실습지의 학생배정은 실습기관 여건과 학생수를 고려하여 지도 교수 의견수렴 후 학부장이 정한다. <신설 2024.10.7.>

제7조(현장실습지도자의 자격 및 역할) 현장실습 지도를 위한 각 지도자의 자격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 2021.2.1.>

1. 실습교과 담당교수: 대학이 고용한 교원과 강사로서, 간호학부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핵심간호술을 반영하여 실습교과목을 개발.운영하고, 학습성과 평가체계에 입각해 평가할 책임이 있으며,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수업개선에 반영한다. 실습담당교수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위해 집담회를 포함하여 담당시수에 준하여 학생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1.>

2. 임상강사: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학생 교육에 동의한 실습기관의 단위 책임자로서 임상경력 3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기본 자격의 원칙으로 대학이 임상강사로 임용한 자이다. 임상강사는 학생 현장실습에 대해 지도·평가의 책임이 있다.

3. 프리셉터: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학생 교육에 동의한 자로 임상경력 3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기본 자격의 원칙으로 대학이 프리셉터로 임용한 자이다. 프리셉터는 임상강사의 책임 하에 학생 현장실습을 직접지도하고 평가를 돕는다.

4. 임상교수: 보건의료관련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학생 교육에 동의한 자로 임상경력 5년 이상, 종합병원 임상과장 또는 중간관리자 이상인 자 중 대학이 임용한 자이다. 임상교수는 학생 교육에 대해 교수·지도·평가의 책임이 있다.

제8조(현장실습지도자의 임무) 임상강사 및 프리셉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간호학부에서 개발한 현장지도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2. 학교에서 요구한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한다.
3. 실습현장에 대해 학생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4. 실습현장에서 역할모델이 된다.
5. 학생의 실무 수행기술과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한다.
6. 학생의 실습목표 달성을 위해 담당교수와 협력한다.
7. 실무실습 수행에 대해 학생에게 피드백 한다.
8. 학생 실무수행에 지지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발생 할 시 담당교수와 상의 한다.
9. 학생 실무실습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의견을 제안한다.
10. 실무실습 지도일지를 작성한다.
11. 매일 학생출석을 확인한다.
12. 학생 실무실습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

제9조(현장실습지도자의 임용절차) ① 임상강사는 간호학부장의 요청을 받은 실습기관의 간호부 최고책임자가 임상강사로서의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대학에 추천하고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프리셉터는 간호학부장의 요청을 받은 실습기관의 간호부 최고책임자가 프리셉터로서의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해당 실습단위의 책임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학에 추천하고 상호 협의하여 선발한다.

③ 임상교수는 간호학부장의 요청을 받은 실습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임상교수로서의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상호 협의하여 선발한다.<개정 2021.2.1.>

④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2.1.>

⑤ 임용서류는 이용예정자의 직위, 학력, 보건의료관련 면허증 유무, 임상경력 등에 대해 실습기관의 공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7.3.1., 2021.2.1.>

제10조(실습생 의무) 현장실습에 임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 사전에 담당교수와 현장실습지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학교규정에 따라 실습복장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해당교과목 실습 전, 중, 후에 실시하는 집담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4. 실습 중 알게 된 실습기관 및 환자 개인과 관련된 정보 및 기밀누출을 금한다.
5. 실습기관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고, 과중한 재산손실이 발생된 경우 필요시 개인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6. 실습에 임하기 전 실습기관이 요구하는 건강검진에 응하여야 한다.
7. 실습기관이 요구하는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해외 혹은 장거리 실습의 경우 사전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해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10. 실습기관에 소속된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실습평가) 학생들의 실습평가는 학습성과평가체계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되, 평가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제12조(실습교과 개선) 실습종료 후 교과목의 학습성과 성취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환류평가 CQI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교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개정 2017.3.1.>

제13조(실습기관과의 협력) 학생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는 현장실습기관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현장실습지도 관련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실습교육발전에 대해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원거리 실습 지원) 원거리 실습이 필요한 경우 실습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3.1., 2024.10.7.>

제15조(시뮬레이션 실습운영 및 학생배치) 시뮬레이션실습의 운영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3.1.>

1. 시뮬레이션 실습은 시뮬레이션 활용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가 진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2. 시뮬레이션 실습은 교내실습, 현장실습, 자율실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3. 시뮬레이션 실습은 임상현장과 유사한 시나리오와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시뮬레이터 또는 표준화 환자, 현장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룸과 디브리핑 룸을

갖추어 운영한다. <개정 2022.12.5.>

4.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을 위해 모듈을 개발한 교수자, 컴퓨터 조작자와 지원인력이 협력한다.

5. 시뮬레이션 실습은 한 팀을 5-6인 이하로 배치한다.

6. 시뮬레이션 실습 중 교수자는 학생의 진행과정을 안내하고, 종료 후 디브리핑을 통해 학습과정을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담당교수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종료한 후 실습일지를 작성한다.

8. 시뮬레이션 운영자는 모듈개발과 운영지식의 학술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